

의안 번호	150
----------	-----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(안)

검토보고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3. 09. 06.

전문위원 김동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출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150호

다. 제출일자 : 2023. 08. 29.

라. 회부일자 : 2023. 08. 31.

2. 제안이유

-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·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, 안심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사 선정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보험료 납부 · 보장기준 ·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~제7조)
- 마.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제외 · 보험증권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0조
「장애인·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관한법률」 제4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3. 07. 13. ~ 2023. 08. 02.
 - 의 견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- 전동보장구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두 종류가 있으며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보험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음
 - “전동휠체어”는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,
 - “전동스쿠터”는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,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보험급여 기준에 적용.

< 전동보장구>

전동휠체어	전동스쿠터
	

-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화와 장애인구 증가로 인해 전동보장구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, 필요 현황을 보더라도 사용자는 늘 것으로 예상되며,

<장애인 전동보장구 필요 및 소지 현황>

필요 및 소지별	전동보장구 종류별	2014		2017		2020	
		비율(%)	추정수(명)	비율(%)	추정수(명)	비율(%)	추정수(명)
필요	전동휠체어	9.5	154,581	8.5	131,512	9.1	133,193
	전동스쿠터	6.7	109,249	6.2	96,152	5.0	73,094
소지	전동휠체어	3.7	59,748	4.1	63,015	6.1	90,037
	전동스쿠터	3.2	52,456	2.6	39,578	3.6	52,510

<출처 : “통계청(2022), 「국가통계포털 참조」>

- 최근 6년간(2017년~2022년) 성북구의 전동보장구 보급 대수는 전동스쿠터 213대, 전동휠체어 162대로 총 375대가 교부되어 있음.
- 「도로교통법」상 전동보장구는 차마(車馬)가 아닌 ‘보행자’로 분류돼 인도만을 이용해야 하며, 전동보장구는 시속 15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지만 이용자의 운전미숙 등으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, 또한 인도의 고르지 않은 노면, 각종 장애물 등으로 인해 도로변으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.
- 하지만 사고 예방이나 보험제도 등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, 전동보장구 사용자와 피해를 입는 사람 모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. 이에 보험료 지원을 함으로써 전동보장구 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본 조례 제정에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며,
- 상위법인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0조,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¹⁾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

1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

애인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한다고 사료 됨.

-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차원에서도 2023년 전동보장구 보험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전동보장구 보험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에 보조금(50%)을 지원할 계획으로, 대부분의 자치구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됨. 현재 노원·강북·도봉을 포함한 20개 자치구 조례 제·개정하였음.

□ 주요내용

- 본 제정안은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-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장애인, 전동보장구, 전동보장구 보험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.
- 안 제3조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
-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전동보장구 보험회사 선정, 보험료 납부, 보험의 보장기준,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장애인등의 보험 지원에 따른 내용을 구성함.
- 안 제9조는 구청장이 전동보장구 보험 체결에 따른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장기간 등을 확인 및 관리 하도록 규정함.

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,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,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,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종합의견

- 이상을 종합해 볼 때, 본 제정안은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필수적 이동수단인 전동 휠체어, 전동 스쿠터에 대한 보험 가입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·심리적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됨.